

# 2020 식품성분 분석비용 지원 신청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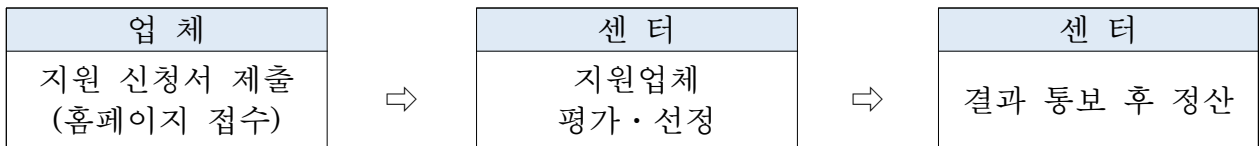
## 1. 지원 대상 : 농산물 및 가공식품 수출(예정)업체

- 농식품을 수출(예정)하는 업체로서, 수출을 위해 식품성분 분석이 필요한 업체
- 임산물, 수산물 및 연초류 지원 제외
  - \*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내부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선정품목에 한하여 지원 가능
- 연구원, 지자체 및 공기업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품목 및 분석항목에 대한 식품 성분 분석비용 지원을 받은 실적(예정)이 있는 업체는 지원 불가

## 2. 지원 내용

- 수출 시 요구되는 식품성분 분석 비용 지원
  - ‘해외식품인증지원센터’의 ‘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’에서 지원하는 분석비용 항목 제외
    - \* ‘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’은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필수 분석항목만을 지원하고 그 외 분석항목은 본 사업에서 지원 가능
  - 일반성분(국내 또는 수출대상국의 관계법령에 따른 제품별 규격성분) 분석
  - 잔류농약, 중금속, 콜레스테롤 등 수출 시 요구되는 성분 분석
- 대미 수출식품 영양성분 분석 비용 지원
  - 21 CFR Part 101 규정에 따른 14개 영양성분 표시 항목 등
    - \* 칼로리(Calories), 총 지방(Total fat), 포화지방(Saturated fat), 트랜스지방(Trans fat), 콜레스테롤(Cholesterol), 나트륨(Sodium), 총 탄수화물(Total carbohydrate), 식이섬유(Dietary fiber), 총당류(Total sugars), 단백질(Protein), 비타민 D(VitaminD), 칼슘(Calcium), 철분(iron), 칼륨(Potassium)
    - \* 상기 외 자발적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영양성분(비타민, 미네랄) 분석비용은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가능

## 3. 지원 절차



- 담당자 : 이현성 선임연구원(063-219-9382, 00366@kfri.re.kr)
- 접수방법 : [www.foodcerti.or.kr](http://www.foodcerti.or.kr) 접속 후 ‘고객지원’의 ‘분석비용 지원’ 클릭
- 모집기간 : 홈페이지에 공고된 접수 기간에 따름

#### 4. 지원 한도

- 품목당 100만원

- \* 제출한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를 실시하여 지원 대상 업체를 선정
- \* 신청 현황에 따라 업체의 지원 대상 품목 수 및 지원한도 등이 조정될 수 있음

#### 5. 지원신청 시 필수 제출문서

- (1) 사업자등록증 사본
- (2) 신청업체의 2019년도 수출실적(USD) 증빙  
(한국무역협회 수출식적증빙, 수출신고필증 등 / 수출예정 업체는 제외)
- (3) 신청업체 통장 사본
- (4) 관련 지출증빙 사본(거래명세서,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(또는 카드 영수증), 시험성적서)

#### 6. 평가 항목

- 신청 품목의 식품성분 분석시험 종류 타당성
- 업체가 의뢰한 시험분석기관의 신뢰도 및 공신력
- 수출 실적 또는 수출 준비 정도

#### 7. 유의 사항

- 지원받은 업체는 지원품목의 인증취득 상황, 매출(내수, 수출) 실적에 대한 자료 요청 시 협조해야 함
- 환급받는 세금 등은 정산불가
- 홈페이지와 내용 차이 발생하는 부분은 본 공고문 우선

## [붙임1] 세부정산기준

### □ 지원불가 항목

- 물품구입비, 지원업체의 해외현지 방문비용, 식비, 유류비, 출장비(운영비) 등 식품성분 분석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비용 지원 불가
- 실제 비용 지출을 증명할 적절한 증빙이 없는 항목 지원 불가
- 대행사 발행 세금계산서 항목은 지원 불가
- 환급받는 부가가치세, 관세 등

### □ 기타사항

- 한국식품연구원은 비용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 업체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항목 정산 불가
- 환율은 분석비용 지급일 기준 외환은행 ‘최종고시환율’ 적용